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59호의2서식] <신설 2024. 8. 16.>

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(대표자)	④ 생년월일
	⑤ 주소(사무실) (전화번호:)	

사후관리 매립시설	⑥ 상호(명칭)	⑦ 매립폐기물 종류
	⑧ 허가 · 승인 · 신고일	⑨ 허가 · 승인 · 신고 면적(㎡)
	⑩ 소재지	
	⑪ 사용종료일	⑫ 최근 사후관리 정기검사일
	⑬ 상부토지이용현황	
승계사유	[] 양수 또는 인수 []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[] 상속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5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신고인 첨부서류	1.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.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1.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2. ⑥란부터 ⑬란까지는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
신고인				시 · 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